

의안
번호

46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04. 18.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고 영 욱 의원 외 7명

나. 의안번호 : 제466호

다. 제출일자 : 2025. 03. 28.

라. 회부일자 : 2025. 04. 10.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시행에 따라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제13조의2, 2023. 9. 14. 시행)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제33조의3, 2024. 3. 26. 시행)을 조례에 반영하여 성북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명 재정비(안 제1조)

나.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정의를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

다.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2)

라.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마.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4. 03. ~ 2025. 04. 08.

○ 의 견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북구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체육행사의 안전조치 의무화,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수의계약 위탁 관리 근거 등을 마련하여 성북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6조의2(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고,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8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임.
- 안 제9조(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9의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이는 체육행사 개최 시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됨.
- 안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부터 제13조(대부·사용허가)까지는 같은 법 제33조의3¹⁾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성북구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됨.

- 그 밖의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명 재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것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1천명 이상이 밀집하는 체육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를 반영하였음.

또한 같은 법 제33조의3 개정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위탁 관리가 가능토록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고 입법 타당성도 인정됨.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